

##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

제정	1997. 7. 9	조례 제1049호
개정	1998. 9. 23	조례 제1088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3. 11. 18	조례 제1323호(행정기구설치조례)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	2010. 11. 25	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일부개정	2016. 9. 26	조례 제2196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6. 12. 20	조례 제222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전부개정	2018. 4. 25	조례 제2367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	2020. 3. 25	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,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에 따라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·조정·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
2.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
3.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·조정
4.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5.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6.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장이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

명한다.

1. 지역주민
2. 시의회 의원
3. 보건의료관련 전문가
4. 보건의료관련 기관·단체 임직원
5. 관련 공무원

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9조(협의·심의·조정사항의 처리)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·심의·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제10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5>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 <2018. 4. 25 조례 제2367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「광명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 및 「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 
조례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